

제주 공동자원생활체계 제도 설계를 위한 서설

장 훈 교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1. 제주에는 공동목장이나 공동어장과 같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발달된 자연 공동자원 체계(natural commons)의 역사와 그 운영 경험이 존재한다. 또한 단지 역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속되면서 제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체에 의한 자연자원의 공동관리는 (1) 제주 인민의 경제적 필요를 공동으로 충족해온 역사일 뿐만 아니라 (2) 제주 자연의 지속가능성에도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 물론 이 공동관리의 역사는 이중적이다. 자원의 이용규칙과 이를 둘러싼 규범은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그 관계는 다양한 유형의 권력을 통해 구조화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와 젠더 관계(gender relations)는 여기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동자원체계에 내재된 자원체계를 둘러싼 공동성의 규범과 그 제도화의 원리들 및 그 모델은 현대 제주가 직면한 문제 해결과 동료시민의 공동번영을 위한 모델로 재발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특히 많은 이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자연 공동자원체계 안에 (1) 자연과 인간 (2)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공동성의 규범을 통해 현대의 파편화되고 원자적인 개인들의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를 조정할 수 있는 윤리와 노동의 양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에 기초해 공동자원체계를 특정 자원을 둘러싼 관리체계에 한정하지 않고,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역사 속의 공동자원체계 모델로부터 출발했지만 그로 환원되지 않는 이러한 입장 및 사고를 나는 공동자원체계 패러다임 혹은 사고(communs thinking)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공동자원체계 사고는 1990년대 초중반부터 본격화되어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확산과정에서 공동자원체계는 크게 3단계의 발전 과정을 보이고 있다. (1) 초기 공동자원체계 사고가 방어 문제에 집중했다면 (2) 2010년을 경유하면서는 공동자원체계의 창안 문제 영역이 확장되었고 (3) 최근에는 방어와 창안을 넘어 지역 전체 차원을 계획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도시는 겐트(Ghent)¹⁾나 볼로냐(Bologna)²⁾³⁾ 등이다.
3. 하지만 방어 수준을 넘어 창안과 계획 단계로 진입한 공동자원체계 사고는 (1) 공동자원

1) <http://commonstransition.org/commons-transition-plan-city-ghent/>

2) https://wiki.p2pfoundation.net/Bologna_Regulation_for_the_Care_and_Regeneration_of_Urban_Commons

3) <http://labgov.city/theurbanmedialab/bologna-regulation-on-public-collaboration/>

체계에 관한 열정을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는 큰 기여를 하였지만 (2) 열정을 넘어 동료시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제도를 창안하는데는 큰 한계를 보여왔다. 현대 맥락에서 공동자원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들이 역설적으로 그 제도의 창안이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그 이전의 역사 속 공동자원체계만을 거론할 뿐, 실제 자신의 모델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공동자원체계에 관한 열정만으론 제도화에 필요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다. 이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공동자원체계 사고가 자신의 열정을 제도화의 현대적 맥락에 필요한 최소한 판단 원리로 전환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럴 경우에만 공동자원체계 사고가 제도를 생산하는 대안 패러다임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런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제주의 공동자원체계 역사와 그 운영 경험에 기초해, 제주의 공동번영을 위한 제도 원리로 공동자원체계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 자체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디자인이 요구하는 공동자원체계 사고의 제도원리 구현에 필요한 구성체계를 제시하고 여기에 적합한 논의 수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공동자원체계 사고에 관한 이해와 무관하게 현재 제주사회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 연구는 그와 같은 논의들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욱 확장된 논의의 틀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만약 우리가 제주의 경험에 기초해 공동자원체계를 통해 제주의 전환을 실험하는 사고와 모델 곧 제주 공동자원체계사고를 구체화할 수 있다면, 이는 단지 제주만의 모델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도시와 지역이 탐구할만한 전망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공동자원체계(Commons): 제도화를 위한 정의

5. 공동자원체계 개념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공동자원체계가 무엇인가를 둘러싼 일정한 혼란이 있다. 연구지형 내에선 이런 혼란을 (1) 공동자원체계 연구에 내재된 학제 융합적 성격이나 (2) 다양한 시민실천과 운동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바꾸어서 말한다면 혼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공동자원체계 개념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발전하는 경로를 찾는 모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구현을 위해 일정한 합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연구지형 내에서 발전한 정의는 형식주의적 정의와 규범주의적 정의로 구별할 수 있다. 형식주의적 정의는 공동자원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확인을 통해 공동자원체계를 판별하고자 한다. (1) 공동체 (2) 이용규칙 혹은 규범 (3) 공동의 자원 등이 확인된다면, 이를 공동자원체제로 보는 것이다. 규범주의적 정의는 이에 반해 해당 자원이 공동의 자원으로 존속해야 하는 윤리적 판단과 이를 가능케 하는 규범의 요소에 집중한다. 이는 반대로 말한다면 자원의 독점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해당 사회의 경계 구성의 원리를 상징과 제도, 그리고 상

식(common sense) 차원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물 연구자인 캐런 베이커이 표현처럼 공동자원체계는 “단순히 이기적인 개인들이 이용하는 유용한 자원관리도구가 아니라, 특정한 규칙, 규범, 도덕적 의무를 갖춘 ‘정의의 영역’ 내에서 작동하는 관계망”(272쪽)이기에, 이런 정의의 차원을 부정하는 건 공동자원체계의 중요한 측면을 사장시킨다.

6. 제도화를 위한 공동자원체계의 조작적 정의에는 이러한 규범 요소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공동자원체계를 구성한 공동성의 규칙이 다른 동료시민들과 직간접적인 연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현대 공동자원체계는 과거의 전통적인 공동자원체계와 달리 고립되어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자원체계들뿐만 아니라 공동성의 경계에서 배제된 다른 시민들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공동자원체계의 정의 안에 통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른 동료시민들로부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특수한 공동체만의 자원관리체계로 귀결되거나 혹은 의도와 달리 특정 집단만을 위한 자원체계를 보장하여 불평등과 격차,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현대적 맥락이 공동자원체계에 관한 정의 안에 통합되어야 한다. 단순히 표현한다면, 공동자원체계에 관한 정의는 현대사회의 안에 있어야 한다.

7. 제주 공동자원체계의 정책적 조작정의: (1) 공동자원체계는 복수의 동료시민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자원체계이며 (2) 그 자원체계의 유지와 존속이 해당 동료시민뿐만 아니라 전체 제주시민의 공동의 발전에 필요한 자원체계이다. (3) (2)조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말한다. 해당 특정 동료시민들에게는 편익을 제공하지만 그 자원체계에 관한 그들의 운영관리가 그 밖의 시민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그들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면, 해당 자원체계는 공동자원체계가 아니다. 현대 공화주의의 사고를 수용한다면 공동자원체계는 ‘비지배’적이어야 한다(127쪽).⁴⁾ 특정 공동자원체계의 유지와 지속은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동료시민의 상황을 자신의 고려 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따라서 동료시민의 상황을 (1) 최소한 악화시켜서는 안되며 (2)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동자원체계에 관한 공화국의 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주 공동자원체계의 이중경향: 탈공동자원체계화와 재공동자원체계화의 융합

8. 제주 공동자원체계는 그 해당 자원체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조건에 직면해 있다. 자연 자원은 위와 아래로부터의 개발 압력에 직면하여 그 관리 방식이 탈공동자원체계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압력의 가속화는 자연자원에 관한 공적 관리와 다른 유형의 공동관리에 관한 필요성을 발생시켰다. 이것이 공적자원체계화와 재공동자원체계화의 모

4) [신공화주의]

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대 제주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공동자원체계가 등장했고, 또한 인류 공동의 공동자원체계로 제주를 인정하고 관리하는 형태도 등장했다. 또한 현대 정보주의 발전양식의 진화 과정에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자원 구성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8-1. 탈공동자원체계화

공동자원체계의 관점에서 제주의 변화를 바라볼 때, 우선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은 제주 공동자원체계의 대표 유형인 마을 공동목장의 감소와 대규모 개발의 연계이다. 현재 제주에 남아 있는 마을공동목장은 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18개소 등으로 총 52개소이다. 공동목장 관리의 필요 감소와 개발이익 향유가 연결되면서 제주의 많은 공동목장이 그동안 골프장이나 관광단지, 유원지 등으로 사라져갔다. 그럼에도 현재 남아 있는 마을공동목장 전체 면적은 마라도(0.3km²)의 약 194배에 해당하는 5832.3ha(5832만m²)로, 관련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제주 토지 구성과 경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⁵⁾ 공동목장은 제주 산업구조 변화와 일상생활의 양식 변화로 인한 공동자원체계의 과소이용이 과잉개발로 연결되는 제주 탈공동자원체계화(de-commonification)의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공유지(公有地): 공동목장과 유사한 사례가 제주도정이 소유한 공유지이다. 공유지는 개발 압력으로부터 공동자원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개발 압력을 강화하는 조건이 되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마라도 면적 30배의 공유지를 매각했고, 이는 대부분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매각된 것이라는 추측이 존재한다.

8-2. 공적자원체계화

이와 같은 탈공동자원체계화의 압력은 동시에 그 주요 해당 자원체계인 자연 자원에 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응 압력을 만들어냈다. 지하수와 바람이 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자원체계를 인정한 공수, 공풍 관련 법제도는 그 대표적이고, 이에 관한 개발을 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발공사의 확립은 그 제도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공적자원체계화는 공동자원체계화와는 다른 것이지만, 시장의 필요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시장 안으로 포섭되었던 자원체계를 일정하게 민주주의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였다. 이와 같은 제주 자연의 공적자원체계화에 관한 압력은 계속 상승 중이다. 이는 아래로부터 가속화되는 개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적 권위의 동원을 통해 이를 제어해야 한다는 사고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원체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자원에 관한 공적자원체계화와 함께 동료시민의 기본필요와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

5)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02158>

는 데 필수적인 공적자원들의 배치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제주에서 공적 자원은 제주 동료시민들의 공동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 비중 또한 높다. 하지만 전통적인 공급과 이용의 이분법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사이에 간극과 균열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공적자원체계의 민주화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국면이다.

8-3. 재공동자원체계화

이와 같은 대응과 함께, 기존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나 공동체가 관리하던 자원체계의 재공동자원체계화의 경향도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1) 자연과 사회를 재연결하고 (2) 사회 안의 개인들을 재연결하는 방식으로 공동자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재공동자원체계화는 공동자원체계에 관한 전통적인 필요 곧 노동의 필요가 감소하는 대신 이를 대체하는 필요를 발굴하여 다른 필요의 자원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생태관광은 마을에 의한 자연의 공동관리를 다시 조직하도록 하였고, 이 관리를 마을 전체의 공동의 부로 전환하는 기획을 계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가시리 등과 같이 자연조건과 공동목장을 활용한 공동자원체계 기반 공동체 발전 모델도 등장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현대 지형에 적합한 새로운 공동성의 규범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현대적 실천이 전개되면서, 그 안에 다양한 유형의 공동자원체계가 확립되고 있다. 이는 ‘마을’ 혹은 공동체가 현대 사회 문제 해결의 한 해법으로 확산되면서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융합으로 만들어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8-4. 인류공동자원체계화

재공동자원체계화의 또 다른 한축은 제주를 인류 공동의 공동자원체계로 구축해온 경험이다. 이는 제주 개발체제의 내적 필요와 제주 시민사회의 필요가 타협하여 제주로부터 출발하지만 제주로 한정되지 않는 공동자원체계를 만들어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제주도정이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제주가 단지 제주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함께 관리하고 이용해야 하는 섬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의 인정은 제주 관광 개발을 위한 자원으로만 활용될 뿐, 그에 적합한 형태의 관리와 책임을 발전시키고 있지 못하다.

공동자원체계 사고의 필요성 증대

9. 현실 공동자원체계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또한 공동자원체계 사고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CPRs 연구의 대가인 마가렛 맥킨은 공동자원체계 사고가 동료시민 사이에 상호조정이 필요한 다수의 문제들에 적용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부터 공원의 이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는 모든 층위에 걸쳐 있다(맥킨, 2016: 160). 공동자원체계 사고는 (1) 인위적 희소성이 발생하는 자원체계를 동료시민의 상호조정을 통한 협력을 통해 대응하여 국가나 시장의 대응과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2) 동료시민의 협력을 통해 다른 자원체계를 발굴하고 운영하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다.

9-1. 자원의 공동이용을 둘러싼 갈등

이는 동료시민들이 함께 이용해야 하는 자원이지만 그 자원 공급의 한계로 인해 동료시민 사이의 공동조정 과정이 필요한 자원체계가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안 개발과 지가 상승,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가스 감축 등과 같이 중대규모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로체계의 물리적 확장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수요관리 측면의 대안을 구성하려는 논의들도 공동자원체계 사고와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중대규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원체계에서의 공동조정 문제도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제주도민속 오일장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⁶⁾은 ‘장터’라는 공동자원체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볼 수 있고, 도서관의 과소 이용 문제나 그 경계 설정 문제 등도 모두 공동자원체계 사고와 그 해법에 영향을 받는 문제들이다.

9-2. 내발적 발전 모델의 확산

민주화 이후 제주에선 국가로부터 부과되는 중앙집권적이고 외래적 개발 모델에 반대하면서, 제주의 자원과 지역 주민을 연계하는 대안 개발의 양식을 모색하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모델을 통합적으로 ‘내발적 발전’(exogenous develop model)이라고 부른다면, 이런 흐름이 2010년을 전후로 다양한 유형의 공적 지원과 함께 더욱 활발해졌다. 이러한 내발적 발전 모델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이 모델은 인력을 포함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의 발전으로 되돌리려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아래로부터의 공동협력에 의한 자원 발굴과 확보 그리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이 전개되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유형의 준-공동자원체계적 접근이 발생하고 있다.

6)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527229>

9-3. 제주 상속경제(economy of inheritance)의 사회화

현재 제주의 인구구조는 향후 30년간 다양한 자산의 상속 문제를 다루는 상속경제를 중요한 국면으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상속경제가 현재와 같이 각 개인이나 가족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1) 현재의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는 한편 (2) 제주 공동의 기반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대안으로서의 공동자원체계 사고

10. 제주시민사회는 오랫동안 (1) 개발로 인한 제주 자연의 파괴와 오염 비판 (2) 제주 개발의 주체적 결정 권한 확보 (3) 자연 개발의 이익 환원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 제주의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현재의 문제인 동시에, 제주의 미래를 둘러싼 치열한 시민갈등의 문제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동자원체계 사고는 (1) 제주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체계의 관리를 통합적이고 지역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2) 현재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3) 기존의 관광성장주의 일변도의 제주경제 전략에 대한 다른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

10-1. 통합주의적 접근

공동자원체계 사고는 (1) 지속적인 개발 압력 하에서 해체되거나 파괴되고 있는 자연 자원체계에 관한 방어를 보다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해준다. (2) 또한 단지 파괴되고 있는 자원체계뿐만 아니라 현재 만들어지고 있거나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주 시민사회가 보고 있는 자원체계를 발굴하고 이를 관리하는 모델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무엇보다도 공동자원체계 사고는 개발에 대한 단순한 비판이나 자연의 단순한 방어, 그리고 개별적이고 원자적으로 창안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주의 공동번영이라는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10-2. 민주주의의 심화

공동자원체계를 통한 대응은 동시에 민주주의의 심화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요청 때문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1)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재편 (2) 자산격차를 포함한 불평등의 심화 (3) 타자로부터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시민사회 혹은 일상생

활의 해체 (4) 노동사회의 해체 등은 그 이전과는 다른 민주주의 기획의 필요성을 그 어느때보다 요청하고 있다. 공동자원체계는 이러한 민주주의 기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열망이 표현되어 있다. 그 기대는 공동자원체계 사고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동료시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자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전통적인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을 넘어 동료시민의 자원 기반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에 접근하는 이와 같은 방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

10-3. 다른 발전 전략의 가능성

기존의 제주경제 성장전략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자본의 동맹을 통한 발전 전략이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제주 공동체는 개발에서 소외되거나 개발의 하위체제로 편입되었다. 이에 반해 공동자원체계는 경제를 바라보는 사고를 공동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공동의 자원체계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유도하여, 제주 안에서 제주와 함께하는 다른 발전 전략을 모색하도록 유도한다. 공동자원체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주발전이란 공동자원체계의 확대재생산 과정이다. 특히 공동자원체계는 기존 경제전략으로 발생하는 동료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전략 사이의 간극과는 달리, 동료시민의 일상생활의 필요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1) 자연과 인간 (2)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조정 관계를 구체화할 수 있다.

10-4. 분권주의의 대안: 개발에서 조정으로

분권과 균형발전을 내걸고 참여정부로부터 본격화된 개발체계는 과거의 개발체계와 연속적이면서도 일정한 단절적 속성을 보이는 제주 신개발체계의 속성을 보인다. 또한 이는 제주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내 균형발전에 관한 요구는 동시에 제주 전체의 개발 압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동자원체계는 이와 같이 분권, 균형발전과 결합되어 있는 제주신개발체계에 대해 동료시민의 자원 기반을 확장하는 자율성의 원리를 통해 분권주의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고 그 실질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제주의 지역 발의 대안: 유사 공동자원체계 사고들

11.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이미 제주 정책입안 집단과 시민사회 양쪽 모두에서 공동자원체계를 둘러싼 혹은 이와 연관된 다양한 유사 정책 제안이나 모델이 제안된 바 있다. 그 대표적인 유형만을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11-1. 제주형 공유자원 활용시스템 마련: 제주시미래비전의 ‘공유자원’ 부문

제주시미래비전에서는 (1) 성장관리부문에서는 제주형 공유자원 활용 시스템 마련 (2) 상생/창조 부문-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 제주에서 원칙4로 “제주자원의 공동자원화를 통하여 제주지역산업 특성과 수놓음 정신에 기반을 둔 제주형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적극 육성한다”/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실천전략 차원에서 (1) 지역공동체 참여형 자연자원 관리체계(38쪽) (2) 사유화 및 경관훼손 해안변의 기능 복구 (3) 지하수의 질적 가치 보전을 위하여 공동주도 관리 강화 (4) 특히 성장관리 부문에서 “공유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체계적이고 공익적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물(지하수)/토지, 바람 등 제주 공유자원의 활용 원칙과 방향을 설정함/ - 공유자원의 활용원칙 설정 등으로 토지, 바람, 지하수 등 제주가 갖고 있는 청정 공유자원을 통한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킴

특히 이 부분에서 (1) 제주 공유자원 및 공공재 관리를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공유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제주의 공기업이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함/제주 공유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자원을 남용하지 않는 범위(생태총량) 내에서 지역경제(소득/일자리)와 상생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함 (2) 공유자원의 체계적이고 공익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관리조직 개편과 신설기관의 설립: 기존기관/본래 각 기관의 설립 기능에 따른 역할 강화 및 상호 간 합리적으로 조정함, 신설기관/제주 공유자원 및 공공재 관리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을 설립함(119쪽)

○ 공유자산/커뮤니티자산 중심의 사업모델 육성 — 공유자산의 관리 활용/사업화의 주체로서 공동체사업모델 구상/ 도시내 유희공간/커뮤니티 시설 등 지역자산의 공동체 자산화 및 공동체 신탁화 방안 마련

○ 제주문화 확산 및 특화자원을 활용한 사업모델 확산

11-2.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2017)

공유지/공유시설/자유자산 등의 신탁사업을 통해 부동산자원의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제안했다. 이 내용은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2017)에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은 제주도가 공유지, 마을 목장 등과 같은 공유자산 뿐만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부동산과 유희시설(현재 가동하지 않는 시설) 등 민간자산까지 관리/운영하는 모델이라는 점이다. 공사는 마을목장, 공유지, 공공시설 등 공유자산과 민간 유희시설, 부동산 등을 신탁받아 이 자산들을 운용 사업

자에게 위탁하고, 이후 발생한 수익을 수탁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⁷⁾

- 11-3. 제주 자연공동자원을 통한 시민배당
- 11-4. 11-4. 관광이익/개발이익 도민배당⁸⁾
- 11-5.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 11-6. 읍면동 마을기금 조성을 통한 시민자산화 가능
- 11-7. 농민수당
- 11-8. 공무 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정부 적립

기존 대안검토와 대안의 통합 방향 모색

- 12. 대안검토(1): 다양한 제안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제설정을 추출한다면 그것은 (1) 동료 시민과 제주도 사이에 (2) 그리고 동료시민 상호 간에 (3) 협력의 양식을 발전시켜 (4) 제주도와 우리 동료시민의 상호안전에 바탕을 둔 보다 많은 자유의 창안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이 제주 근대화 과정에 구축된 제주개발체제에 대한 성찰과 다른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사고의 결합으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그 대안 구축의 중심에 제주의 자율성 방어와 확장을 위한 투쟁의 역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공동자원체제는 이러한 전망을 보다 일관성 있게 통합하는 동시에, 그 내적 요구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제주의 역사와 결합하여 설명하는 전환 담론이자 구체적인 정책 입안에 필요한 안내 지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13. 대안검토(2): 공동자원의 관점에서 대안 제도를 모색해온 대부분의 논의들은 (1) 자연 공동자원(natural commons)으로부터 (2) 사회공동자원(social commons)⁹⁾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사회공동자원은 창출해야만 하는 대상이라면, 자연공동자원은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고 그 공동자원의 이용에 관해 일정한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기본 방향은 두 가지 원리를 내부에 보유하고 있다. (1) 하나는 자연 공동자원의 방어가 사회관계의 대안적 조직화의 과정을 동반한다는 것이고 (2) 사회공동자원의 창출은 이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그 내부의 불평등을 완화

7)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5198805547483073>

8) http://www.cpbk.co.kr/CMS/news/view_body.php?cid=722508&path=201805

9)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Anna Coote, 2017, "Building a new social commons"

하고 새로운 권리를 보장하는 기제가 되어 (3) 자연 공동자원에 대한 파괴적 개발을 완화할 수 있거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적 장벽과 운동 장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 공동자원 → 사회공동자원 → 자연공동자원]으로 연결되는 유기적 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에 현재 제주 공동자원 제도 디자인의 일차적인 과제가 있다고 보인다.

14. 이는 자연과 사회의 상호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공동자원체계와 안전을 연결하는 공동자원생활체계(commonfare)로 다양한 지역 대안을 통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15. 공동자원생활체계의 원형: 제주에는 이와 같은 전망이 구체화된 역사적 원형이 존재한다. 공동자원체계는 제주에서 일차적으로 노동의 대상이었다. 이는 바꾸어서 말한다면 제주의 노동조건 위에서 공동자원체계라는 특정한 노동양식을 포함한 자원체계의 관리 모델이 성립될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동자원체계는 노동을 위한 기반이 되었고, 그 노동을 통해 제주 인민은 일정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제주 인민이 공동자원체계를 통해 풍족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모든 노동이 공동자원체계와 결합한 것은 아니었다. 노동의 대상인 공동자원체계는 산과 바다에 집중되었고, 토지는 공동자원체계로 관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해에 기초해 제주 공동자원체계로부터 우리가 도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 자원 기반이 제주 인민들에게 존재했다. (2) 이 과정에서 그 자원의 공동관리와 노동의 공동화를 위한 제도가 발전했다. (3) 이 노동은 공동자원 기반의 재생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과 재생산을 동시에 고려하는 특정한 인간-자연 관계를 형성했다. (4) 제주의 인민은 이와 같은 공동자원체계에서 나오는 자원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활안전을 방어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형태를 나는 ‘공동자원생활체계’(commonfare)의 역사적 원형 혹은 ‘약한 공동자원생활체계’라고 부른다. 이 원형은 공동자원체계를 통해 인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 안전 보장을 통해 공동자원체계를 유지 존속시킨다는 데 있다. 공동자원체계 사고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자원체계의 해체나 파괴는 공동자원생활체계의 유기적 재생산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16. 강한 공동자원생활체계: 공동자원체계의 해체나 파괴를 방지하고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강한 공동자원생활체계의 유기적 재생산이 필요하다. 이 부분의 핵심은 안전의 공동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공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 동료시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자원체계가 동료시민의 통제 하에 존재해야 한다. (2) 또한 단지 통제만이 아니라 그 자원체계를 통해 실제 안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시민안전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시민안전 개념의 핵심은 신체의 안

전에 기초해 이를 경제와 사회 분야로 확장하고, 그 공급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그리고 권리는 시민에게 분배하는 형태였다. 정부와 시민의 협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국가재분배를 통한 안전은 노동사회를 보완하는 기획이었다. 하지만 노동사회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국가재분배와 개인 안전 사이의 간극이 확장되면서, 시민 자신이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요구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동자원생활체계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공동자원의 기반을 동료시민에게 제공하여 이는 동료시민에게 자율성의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시민들과의 상호공동조정 과정 안에 참여하는 기회를 강화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사회연대의 형식을 제공한다.

17. 기본방향: 제주 공동자원생활체계의 기본 방향은 동료시민의 자율과 안전을 위한 투쟁 과정에 그 자원 기반의 운영, 확장,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이는 전통적인 두 접근 (1) 국가에 의한 생활안전보장 (2) 시장에 의한 생활안전보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동료 시민 공동의 생활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동자원생활체계가 국가를 대체하거나 시장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공동안전의 방어와 확장이라는 공동자원생활체계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를 변형해나간다는 의미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없는 공동자원생활체계를 상상하기 힘들며, 현재 관점에서 전면적인 탈시장화와 공동자원생활체계를 연결하는 건 힘들다. 또한 공동자원생활체계는 시민사회에 근거하지만 그 시민사회의 내적 변화를 전제한다. 다른 동료시민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일은 모든 공동자원생활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과업 중 하나이며, 이에 실패한다면 공동자원체계의 구현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동자원생활체계(Commonfare)

18. 공동자원생활체계(commonfare)의 정의: 공동자원생활체계란 공동자원체계를 통해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와 같은 공동자원생활체계는 기존의 복지 모델을 공동자원체계와 그 사고를 통해 혁신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원래 이 개념은 이탈리아에서 불안정 노동 조건을 넘어서는 노동과 시민의 권리 확보를 위한 논쟁 과정에서 등장했다. 처음 등장한 것은 2009년으로 알려져 있다.¹⁰⁾ 기존 복지 모델과의 핵심적인 차이는 공급과 이용의 전통적인 분리를 넘어선 공동자원체계로 자원제공(provision) 한다는 데 있다. 공동자원생활체계에 적용되는 공동자원체계의 범주는 자연 공동자원부터 디지털 공동자원까지 모든 유형의 공동자원을 포괄하며, 이 공동자원들의 조합과 배치를 통해 동료시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9. 목표: (1) 공공부문 (2) 시장부문과 함께 제주 동료시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하는 제3의 (3) 공동자원부문에 제주 공동자원생활체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제주 공동자

10) general intellect, 246쪽, “commonfare or the welfare of the commonwealth”

원생활체계 제도의 목적이 있다. 공동자원생활체계는 (1)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각 개인의 조건과 무관하게 그에게 우리가 동료시민으로서 공동안전을 보장하는 체계이다. 또한 그에게 다른 동료시민에 관한 공동안전의 책무를 요구하는 체계이다. (2)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각 개인의 발전을 전체 제주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걸 의미한다. 곧 공동안전에서 공동의 발전으로 나아가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려는 동력을 그 안에 보유한 체계이다.

- 19-1. 제주 공동자원생활체계 구현은 자연 공동자원체계에서 출발하여 제주 그 자체를 동료시민의 공동자원체계로 전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from the natural commons to the Jeju as commons).
 - 19-2. 공동안전: 공동안전의 과제는 시장 부문에 관한 의존을 줄여, (1) 공공부문 (2) 공동부문의 연합을 통해 동료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 19-3. 공동발전: 공동안전은 화폐의 가치로 척도를 삼되, 공동발전은 시간을 그 척도로 한다. 각 개인의 발전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조건이자 제약인 시간의 통제 문제이다. 공동발전은 그 시간을 동료시민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 19-4. 목표시간: 공동자원생활체계는 2050년 형성을 목표로 2020년부터 30년간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규정한다. 공동안전에서 공동발전으로 나아가는 공동자원체계의 구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전체사회 질서의 중대한 전환 과제를 내포하고 있기에, 그에 적합한 시간지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19-5. 단계설정: 공동자원생활체계의 구축은 10년 단위로 단계를 나누어 접근하되, 2050년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필요한 과제들로 역행설계한다.
20. 비지배의 조건: 공동자원생활체계의 구성은 그 구현 과정에서 다른 동료시민과의 결합을 전제한다. 이 결합은 다른 동료시민의 연대에 물리적으로 구속되는 상황을 낳고, 그 물리적 구속 상황은 또 다시 다른 시민과의 상호조정 필요성을 강화하는 순환을 낳는다. 이러한 다른 동료시민에 의존하는 이런 물리적 구속 상황은 (1) 파편화된 개인들의 원자적 자유 관점에서 구속 상황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2) 동료시민 사이에 비지배의 조건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3) 사회적 자유의 창안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료시민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유는 바꾸어서 말한다면 동료시민과의 분리와 더 나아가 다른 동료시민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 조건을 구축할 수 있다. 공동자원생활체계는 공동의 자원 기반에 공동 구속되는 조건을 강화하여 나감으로써 (1) 다른 이들을 지배하지 않는 조건 (2) 다른 이들로부터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이런 조건을 통해 동료시민의 일상생활과 전체사회의 관계 안에서 더욱 평등한 조건을 구축할 수 있다. 공동자원생활체계가 그 구현 과정에서 ‘비지배의 자유’라는 공화주의의 구현과 친화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¹¹⁾

11) 이에 대해서는 [신공화주의]

21. 제주 공동자원생활체계의 구성: 제주 공동자원생활체계는 (1) 공공-공동자원체계 (public-commons) (2) 공동체-공동자원체계 (community-commons) (3) 인류-공동자원 체계 (humankind-commons) (4) 개방-공동자원체계 (open-commons)라는 사중체계로 구성된다. (1) 공공-공동자원체계는 기존의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되 이를 더욱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 보장은 강화하고 이에 대한 민주적 개입과 통제의 다른 방식을 찾는 데 공공-공동자원체계의 과제가 있다. (2) 공동체-공동자원체계는 공동체가 관리하는 공동자원체계이다. 이때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복수의 시민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성하는 모든 유형의 공동자원체계에 적용된다. (3) 개방-공동자원체계는 모든 동료시민에게 보장되는 자원체계이다. 공공-공동자원체계와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공공-공동자원체계는 그 이용의 권리와 관리에 대한 의무가 제주 도민에게 한정된다는 데 있다. 공공-공동자원체계는 기본적으로 제주도민 전체의 자원체계이다. (4) 인류-공동자원체계는 제주의 자원체계이지만 인류 모두의 자원체제로 제주가 개방하고 그것이 인정된 자원체계를 말한다. 이는 바꾸어서 말한다면 제주가 인류의 신탁을 받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원체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주는 이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22. 제주 공동자원생활체계는 다음과 같은 네 범주에서 자신의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1) 지속과 혁신 (2) 창안 (3) 연결 (4) 계획

22-1. 지속과 혁신: 이는 현재 존재하는 공동자원체계의 방어와 보호 그리고 유지를 통해 공동자원체계의 질과 그 이용가능성을 향상하는 걸 의미한다. 제주정부와 동료 시민은 공동자원체계의 이와 같은 지속과 혁신에 공동책임을 지며, 제주정부는 해당 공동자원체계가 동료시민의 자기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22-2. 창안: 현대 제주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는 공동자원체계를 새로 만드는 걸 말한다. 이때 새로 만든다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탈공동자원체계화되었던 자원을 다시 공동자원체제로 전환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22-3. 연결: 공동자원체계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연대의 책임이 모든 공동자원체계에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22-4. 계획: 공동자원체계가 제주 전체의 안전과 자유를 위한 기본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계획이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이때 계획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공동자원체제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23. 제주 공동자원 시민권: 이와 같은 일련의 구상은 제주 시민의 권리와 공동자원을 연결 시킴으로써, 제주 시민권을 재규정하는 논의로 나아간다. 여기에서 공동자원에 관한 [권리-책임] 관계의 재규정이 필요하다. (1) 제주 공동자원의 위기와 확장은 제주 동료 시민 모두의 책임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책임의 강도와 그 실현 책임은 자신의 위치와 개인의 역량에 맞추어 차등화되어야 한다. 곧 공동자원에 관한 우리의 책임은 “공통적이지만 다르며, 각 역량을 존중하는 책임”이다. (2) 하지만 그 권리의 보장은 동료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23-1. 시민에게는 (1) 물질적 안전(material safety) (2) 기여를 위한 기회 보장 (3) 자신이 속한 모든 의사결정 단위에서의 권한 보장이라는 3대 차원이 확보되어야 한다.¹²⁾

23-2. 동시에 모든 시민에게는 공동자원생활체계의 구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거부권: 모든 시민은 그 개인 및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 일정한 손해를 끼치려는 결정을 내리는 이들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동조정권: 모든 시민은 자신의 안전이나 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체계에 관해 다른 동료시민들과의 조정을 또 다른 동료시민에게 요구하는 공동조정권을 지닌다.

24. 전략: 모든 동료시민은 공화국의 시민이며,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그에 적합한 자유의 내용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볼 때, 공동자원생활체계는 공화국의 발전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공동자원생활체계가 (1) 상호권력 전략(strategy of reciprocal power) (2) 헌법규정 전략(strategy of constitutional provision)이라는 비지배의 실현 조건을 현실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4-1. 상호권력 전략: “지배자와 지배받는 자가 소유한 자원을 보다 평등하게 만드는 것”(152쪽)이라고 할 때, 공동자원생활체계는 다른 시민의 자의적인 간섭이나 그 시도에 영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상황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24-2. 헌법규정 전략: 지배로 전환될 수 있는 자원을 다른 동료시민과의 관계 내에서 조정함으로써, 지배의 강도를 감소시킨다. 이는 한 시민의 지배 혹은 권력을 강화시키는 배타적 자원 집중에 관해 헌법적 규정을 통해 통제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너무 적게 가진 시민들을 방치하는 동시에 공동의 기반을 해체하는 효과를 발휘해온 국가에 관한 통제와 파괴적 성장을 그 원리로 운영해온 시장에 대한 헌법규정을 통한 통제도 포함한다.

12) 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services

제주 공동자원체계의 제도 설계를 위한 원리

25. 제주공동자원생활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의 토대가 되는 공동자원체계 (commons)에 관한 원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제도의 청사진을 그리기보다는 그 제도의 디자인을 위한 일반적 원리를 추출하고 그에 관해 동료시민들과의 토론을 진행하며 만들어가야 한다는 폭넓은 요구가 존재한다. 이때 일반적 디자인 원리의 정립은 제주 안에서 제주에 대항하는 과정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정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전세계의 학자와 활동가, 정책입안가들이 관련 제도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구상을 전개하고 있다.¹³⁾¹⁴⁾ 토론을 위해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5-1. 상속의 권리: 공동자원은 다음 세대에게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공동자원이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전 자원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바꾸어서 말한다면, 다음 세대의 권리가 모든 결정에서 정당하게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 25-2. 불가피성의 입증의 원리: 공동자원의 훼손이나 파괴는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가피성이 입증될 때에만 가능하다.
- 25-3. 연대의 권리: 공동자원은 동료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체계이기 때문에, 그 자원의 운영과 관리는 동료시민과의 연대에 귀속되어야 한다.
- 25-4. 이용의 권리: 동료시민은 자신의 삶에 필수적인 자원체계에 관해 그 소유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25-5. 민주적 자율관리의 원리: 공동자원체계의 관리는 민주적 구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민주적이란 해당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참여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 절차가 동등참여의 원칙이 부여된 조건 하에서 그들에 의해 정립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그 운영의 결과가 다른 동료시민에 대한 지배로 귀결되어서도 혹은 그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 25-6. 구이용의 조건: 특정 공동체의 정체성과 분리되지 않는 공동자원체계에 대한 공동관리자들의 권리는 영구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25-7. 군사화의 원리: 인류-공동자원체계를 포함해 제주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자원체계는 비군사화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13) <http://www.onthecommons.org/ten-tenets-law-commons-natural-world#sthash.nnlkXqW.dpbs>

14) <https://www.onthecommons.org/magazine/10-commandments-of-commons-economics>

- 25-8. 방어의 원리: 공동자원체계는 보호되어야 한다. 공동자원체계는 오용, 침해 그리고 허용되지 않은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자원관리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판매하거나 양도 등의 행위를 할 때 공동자원시민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5-9. 보상의 원리: 공동자원관리에 참여하는 동료시민의 '일'은 보상되어야 한다. 동료시민은 그 '일'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야 하며, 공동자원관리자는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25-10. 확장의 보장: 공동자원생활체계는 자신을 확장하는 체제이다. 공동자원의 활용은 공동자원의 확장을 위한 과정에 우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 25-11. 공동관리의 인간적 한계에 대한 인정 원리: 공동자원생활체계의 공동성의 범위 안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행위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자원생활체계의 운영에 내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한다. 공동자원생활체계의 운영과 관리는 비인간 행위자에 관한 동맹의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해 언제나 열려 있는 질문을 받아야 한다.
- 25-12. 분배의 원리: 공동자원체계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그 관리 주체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 25-13. 연결의 의무: 공동자원체계 사이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 개별 공동자원체계는 만들어내거나 개발할 수 없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에서 지역 수준의 공동자원생활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의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공동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협력에는 (1) 물질적인 협력 (2) 상징적인 협력 모두 필요하다.
- 25-14. 시장의 개입조건: 공동자원체계 그 자체는 상품화될 수 없다.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은 공동자원체계가 생산하는 자원이나 서비스이며, 그 자원과 서비스의 상품화는 (1) 다른 동료시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협하지 않는 조건 (2) 해당 공동자원체계의 지속적인 재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자원체제시민의회(communs council)

26. 공동자원체제시민의회는 제주의 공동자원생활체계 전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시민의회이다.

27. 갈등의 조정: 공동자원체제시민의회는 (1) 자원을 공동자원으로 전환할 때의 갈등 (2) 공동자원과 공동자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고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자원체제시민의회에는 갈등을 조정하는 일반 원리가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 원리는 “비독재성”과 “비지배성”이다.

27-1. 비독재성과 거부권: 제임스 피시킨은 “독재란 아무에게도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을 다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누군가에 심각한 박탈을 강제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82쪽)¹⁵⁾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시 말한다면 해당 정책 혹은 해당 결정의 불가피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본질적인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비독재성의 원리는 그 불가피성이 입증되지 않는 결정에 관해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를 근본적인 이익이 침해당하는 개인과 집단에게 부여해야 한다. 이는 ‘거부권’의 형태로 부여되어야 하고, 그 개인 및 집단에게 일정한 손해를 끼치려는 결정을 내리는 이들은 그들과 불가피성에 관한 토의에 동료시민으로서 임해야 한다.

27-2. 비지배성과 공동조정권: 해당 자원체제의 이용에서 다른 동료시민에 관한 지배의 조건이 창출된다면, 그 자원체제의 이용은 지배 조건의 완화를 위해 공동자원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비지배성의 원리는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모든 동료시민에게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제주는 공화국의 일부이자 공화국의 수호자로서 제주 시민에게 비지배의 자유 보장을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공동조정권”의 형태로 나타난다. 공동조정권의 대상이 된 자원체제는 동료시민들과 토의에 들어가야 하며, 비독재성과 비지배성의 원리에 기초해, 그 자원체제의 운영에 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편적 공동자원 서비스(Universal Commons Service)

28. 제주 공동자원생활체제의 구현은 공공-공동자원체제를 동료시민에게 보편적 공동자원 서비스로 제공하는 걸 중요한 축으로 한다. 공공-공동자원체제는 현재 제공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보다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동시에 그 이용 비용은 없는 걸 목표로 한다. 공공-공동자원체제가 동료시민의 기본시민생활에서 출발해 문화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문화시민생활 영역으로 확장해나가는 체계라고 할 때, 이 목표는 동료시민의 기본생활과 문화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의 최소화를 지향해 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화폐에 의존하는 생활방식과 안전, 그리고 문화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

29. 보편적 공동자원서비스는 보편적 시민노동을 통해 구현된다. 보편적 공동자원 서비스와

15) [민주주의와 공론조사]

일반 공적 서비스와 다른 점은 그 공급 과정이 동료시민의 노동과 기여를 통해 제공된다는 데 있다.

공동자원생활체계의 법-제도화

30. 제주시민협약: 제주 공동자원생활체계가 동료시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1) '지역협약'의 형태로 (2) 공동자원생활체계 헌장으로 선언될 필요가 있다.

30-1. 지역협약: 공동자원체계를 관리하는 제주의 다양한 유형의 결사들 혹은 운영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자원을 공동자원체계로 운영하고자하는 제주 동료시민들이 모여 제주 공동자원체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역협약을 체결한다. 이 지역협약은 (1) 제주의 공동자원에서 출발해 (2) 제주 전체를 동료시민의 공동자원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원리와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기술한다.

30-2. 이는 제주공동자원생활체계가 부문 접근 방법(sectoral approach)이 아니라 지역 접근 방법(territorial approach)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이 선언은 제주를 스스로 관리하는 지역으로 선언하는 동시에 그 자주관리의 물적 기반과 협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0-3. 이는 단지 분권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제주의 자율성을 향한 투쟁의 역사를 담는 것이며, 그 자율성의 투쟁을 지속하기 위한 제주공동의 자원체계를 동료시민과의 협력을 통해 제주 안에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제주 인민의 삶을 제주 공동으로 방어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그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31. 제주 공동자원생활체계를 위한 조례: 제주의 공동자원 관리 전통과 그 안에 내재된 운영 원리를 현대 제주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도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¹⁶⁾조례는 현실적으로 최초 국면에서는 (1) 지역협약의 제도화 (2) 그리고 이행조건의 구체화를 위한 공적지원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화한다. 이후 조례는 제주공동자원생활체계의 구현과 발전 정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경유하도록 설계한다.

32. 공동자원생활체계를 위한 법 체계 구축:¹⁷⁾ 현실에서 동료시민 사이의 합의를 통해 구축될 수 있는 공동자원체계와 공동자원체계의 정의 혹은 그 규정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

16) 영국의 [The Commons Act 2006]은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다.

17) <https://www.resilience.org/stories/2018-07-17/commons-based-legal-institutions-for-affordable-housing/>

있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토지, 주택 등과 같이 공동자원체계로 규정되어야 하는 자원체계에 공동자원생활체계의 규칙이 접합되거나 혹은 그 경합적 원리로 등장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법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법적 보장은 공동자원생활체계의 실질적 보장과는 그 결이 다르고, 단지 하나의 권리로만 보장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권리의 보장이나 강화는 현실 속 자원체계의 운영에 개입하고 그 경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2-1. 국제공동도시와 공동(자원)의 섬: (1) 국제자유도시라는 전망의 대안으로서 자유로운 이동의 문제 설정을 포함하면서도 (2) 이를 공동자원과 연결하는 국제공동도시의 구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 구상은 세계평화의 섬과 함께 제주를 공동자원의 섬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32-2. 제주특별법의 구성 내용이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는 제주의 발전에 관한 규정 중 (1) 인류 공동의 섬으로서 제주의 역할에 대한 규명과 (2) 동료시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원칙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다. 공동자원의 섬은 이와 같은 공백에 대응해 시민의 관점에서 제주의 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공동자원의 섬 구상의 최종 단계는 제주를 동료시민의 공동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는 민주주의의 기획에 있다. 이는 현재의 민주주의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청하며, 그 구체적인 모델에는 보다 많은 연구와 실험, 제도와 상식 및 일상생활의 변화가 요청되는 거대한 전환의 작업이다.

제주공동자원기금(Commons Fund)

33. 제주공동자원생활체계 구현을 위한 재원은 제주공동자원기금을 통해 조성한다. 이 기금은 공동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소득을 올리는 이들로부터 그 소득에 비례하여 징수한다. 그 운영 책임은 제주공동자원시민의회에서 맡는다.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공동자원 기금은 정부로부터 분리된 민주적 관리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했다.¹⁸⁾ 조세는 법에 기초해야 하므로 이는 법 제정 문제가 따른다. 공공자금의 적립을 통해 누적적으로 공동자원기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가이 스탠딩과 같은 이들은 공동자원기금을 각 시민에게 배당하는 형태로 주장한다. 그러나 각 개인에게만 분배할 것인지 공동자원생활체계의 전환을 위한 전략 구현에 기금을 투입할 것인지 등 기금의 운영 방안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제주공동자원기금은 (1) 전환기금 (2) 시민배당의 두 형태로 운영하며, 그 비율은 제주공동자원생활체계의 구축 정도와 조율하여 제주공동자원시민의회에서 결정한다.

18) <https://blog.p2pfoundation.net/guy-standings-commons-fund-for-the-precarariat/2018/10/23>

제주 정부의 역할

34. 제주정부는 (1) 제주도와 동료시민 (2) 그리고 동료시민 상호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조건을 창출하고 (3) 실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두 가지 의미이다. 하나는 제주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제주도와 동료시민의 상호협력 원리 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한 적극적인 책임에 구속된다는 것이다.
35. 공공자원의 민주화: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은 도 전체의 자원으로 그 공공자원에 관한 민주적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1) 도민 전체의 안전과 생활에 대한 보장 (2) 그 관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36. 제주 공동자원 기반 민주주의 기획의 발전: 제주 공동자원생활체계를 민주주의 계획의 고려 안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1) 선분배의 필요성 (2) 공동자원체계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의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고려할 공간을 연다.
- 36-1. 선분배(pre-distribution)는 재분배와 달리 동료시민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원체계를 미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공공성의 확보가 조세를 통한 자산 격차 조정과 그 수입을 공공재의 확대재생산에 투입한다고 볼 때, 선분배는 공공성의 확보를 (1) 분산적이고 중첩화된 공동자원체계의 선공급을 통해 (2) 다중심적 체계로 설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 36-2. 소유가 아닌 공급(provision)을 통한 안전: 공동자원생활체계는 자원의 소유를 통한 안전이 아니라, 공동자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그 자원에 대한 공급을 실현하는 대안경제를 지향한다. 해당 자원체계의 소유 유무와 무관하게 동료시민은 해당 자원체계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 36-3. 기여의 분배: 또한 이런 공동자원생활체계는 그 구성과 운영에 동료시민의 기여를 요구하며, 그 기여를 평등의 조건으로 여긴다. 이는 노동에 의한 자산분배를 원칙으로 하던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민주주의의 조건이 동료시민에게 부과된다는 걸 의미한다.

생성적 공동체-공동자원체계의 구축

37. 제주 정부의 선분배는 동료시민에게 생성적 공동체-공동자원체계의 형태로 분배되어야 한다. 생성적 공동자원체계란 그 자원체계의 운영을 통해 공동체의 활력 보다 구체적으

로 말한다면 제주 시민권이 보장해야 할 (1) 물리적 안전 (2) 기회의 보장 (3) 참여의 확대라는 3대 조건을 충족시키는 활동을 제공하는 공동자원체계를 말한다. 이는 전통적인 ‘착취적 소유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원체계를 활용한다는 의미이다.¹⁹⁾ 다시 말한다면 수익이나 임대료를 목적으로 착취적으로 운영되어선 안 된다. 이를 통해 각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균형적인 삶(community balanced living)이 가능할 수 있다.

38. 공동체 공동자원은 일정한 한계 내에 존재해야 한다. 이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가 또 다른 개발에 관한 압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동시에, 모든 동료시민들이 일정한 한계 내에서 다른 동료시민과의 공동의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주 공동자원생활체계의 하부구조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예시

39. 제주 공동자원생활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자원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통해 구현된다. 그 구현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다.

39-1. 제주공동자원은행: 공동자원생활체계가 구현되는 데 있어 화폐의 공동자원화는 필수불가결한 전제이다. 공동자원을 방어하거나 창안하는 데 있어서는 자금이 필요하며, 이 자금은 제도를 통해 보장될 필요가 있다.

39-2. 제주시민과학기술센터와 공동체작업장(community workshop): 이는 동료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물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사물들의 제작과 수리, 그 변형에 필요한 시민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공동체작업장은 동료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작업장이다.

39-3. 제주-수리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repair) 선언²⁰⁾: 제주로 유입되거나 제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인공 제작물들은 동료시민들이 그 제작물을 수리할 수 있는 조건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이는 또한 점진적으로 수리할 수 없는 인공제작물에 대한 소유를 제약하는 조건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39-4. 농지공동자원제도: 한국에서는 이미 상속 과정에서 상실되는 농지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농지공유’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농지공동자원제도는 그 운동과 연결되는 것으로 (1) 제주의 농지를 공동자원으로 규정하고 (2) 공동의

19) [최후의 전환], 197쪽

20) 수리할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는 다음을 참조. <https://ko.ifixit.com/Right-to-Repair/Intro>

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연안 어장이나 중산간 목장에 비해 농업 분야에서 공동자원제도가 약한 제주 현실에서 앞으로 전면화될 상속경제를 계기로 농지를 제주의 공동자원으로 유지 존속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39-5. 제주공동자원계좌(Commons account): 모든 제주시민은 공공-공동자원에 관한 제주공동자원계좌를 선분배받는다.

39-6. 공동자원 개인 소유 일몰 조항: 공동자원의 소유는 그 공동성의 구현에 적합한 형태로 재편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자원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자원체계가 개인의 소유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은 특정 시간 안에 협상을 통해 공동의 통제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제주 공동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한 시민협동조합: 공영개발의 민주적 재구성

40. 공영개발은 제주의 공공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제주에서 공영개발론이 등장한 배경은 (1)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면 (2) 공영개발을 통해 그 수익을 제주도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고민하자는 것이었다. 공영개발은 제주의 자연자원을 시장과 연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제주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관한 제주시민사회 비판의 기본 내용은 (1) 공영개발이 과도한 개발수요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진행되지 않고 (2) 시장의 수요를 공기업이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데 있다.

41. 공영개발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되, 이를 현재 제주 공동자원 전체 부분과 연결하여 그 개발과 관리를 진행하는 공동자원의 관리와 개발을 위한 조직을 전체 도민이 참여하는 시민협동조합의 형태로 확대 재편한다. (1) 모든 시민은 협동조합원이 되며 (2) 그 운영은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와 제주 사회적 경제가 구축한 기본 내용을 따른다.

이행

42. 전환시나리오와 이행을 위한 혁신체계: 제주 공동자원생활체계의 구상은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이며, 그 추진 과정은 단일하고 경직된 청사진의 구현 과정으로 이해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이 제주 전환에 필요한 계획과 그 구현 과정을 실행하고 감독하며 계속 변화를 주며 혁신시켜 나갈 수 있는 (1) 이행시나리오(transition scenario) (2) 이를 담당하고 구현해나갈 조직 구성 문제 (3) 관련 의제를 뒷받침하며 이를 정치적 구현해나갈 정치적 동맹 형성 (4) 이행의 하부구조 구축 문제

가 거론되어야 한다.

43. 시간지평: 이와 같은 구상이 전제하고 있는 시간지평을 분명히 하는 것은 구상의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공동자원체계의 구상을 현실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은 장기적인 과제이다. 이는 이 구상이 ‘전환’의 관점에서 제주 현실에 개입한다는 걸 의미하며, 이때 전제하고 있는 시간지평은 30년 전후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 상속의 경제 국면에 개입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또한 2050년이라는 보다 분명한 목표 시점을 두고 그와 같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개입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44. 공동자원생활체계는 제주 시민의 일상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고 동시에 생활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의 구성에 준거해 그 대안을 확보해나간다. 이는 동료시민의 일상적 문제로부터 출발해 대안을 구축하는 동시에 아래로부터 동료시민의 동의를 확보하여, 제도 확장의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1) 연세 (2) 식생활비 (3) 이동비 (4) 난방비 (5) 관계유지와 확장비용 (6) 가족안전 비용 등 그 구성은 다양하다.
45. 제주노동시간의 재구성: 현재와 같은 노동시간체제에서는 공동자원생활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 이는 현대 공동자원체계가 노동과 분리된 시민사회의 결사를 통해 작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의 대상이었던 자원체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자원체계에선 공동자원체계를 위한 별도의 시간이 필요없지만, 현대 공동자원체제는 노동시간 이후의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의 재구성은 그 핵심 전제 중 하나이다. 노동시간 재구성의 기본 방향은 (1) 경제노동시간의 축소 (2) 공동자원체계의 형성에 기여하는 일의 시간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 45-1. 주20시간 노동제: 노동시간 감축은 담대하게 제안되어야 한다. 주 20시간 노동제는 그 대안 중 하나이다. 이 노동제는 단지 공동자원생활체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제주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1) 과잉노동 (2) 실업과 불완전고용 (3) 과소비 (4) 고탄소방출 (5) 낮은 안전보장 (6) 불평등 97) 삶을 위한 시간의 박탈 등과 같은 문제에 주20시간 노동제는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²¹⁾ 또한 이는 경제발전을 이유로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개발 압력으로부터 제주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핵심 제도가 될 수 있다.
- 45-2. 이를 위해 제주는 (1) 동료시민에 대한 완전고용보장을 해야하며 (2) 이는 제주형 일의 보장(job guarantee) 정책과 함께 해야 한다. 동료시민의 ‘일’에 대한 보장은

21) “21hours: Why a shorter working week can help us all to flourish in the 21st century”, p2

제주공동자원생활체계의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다.

46. 공동자원시민노동: 공동자원생활체계의 구현에 필요한 동료시민의 기여는 시민노동이라는 대안적 관점에서 평가되고 보상되어야 한다. 이는 전통적인 공적노동과 사적노동과 구별되는 제3의 노동 형태로 동료시민의 자유와 공동노동의 속성을 결합하는 노동양식이다. 이는 현재 “사회적 가치실현 및 지역일자리 창출”이란 범주로 제주도정과 제주국 제주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안에 일정 부분 구현되어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현재 600여 명이 이런 형태로 노동을 하고 있다.²²⁾ 제주는 도내 기업들의 94%가 10인 미만의 영세규모 사업체들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임금수준은 전국의 약 80% 수준이다. 대기업은 거의 없다. 고용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조건이 없는 형편이다. 이런 조건에서 일자리 창출의 기본 방향이 대형투자사업 유치를 통한 고용인력 확보라는 전략이 등장한다. 이는 개발 압력을 가속화하는 조건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제주 정부가 보장하지만 공공노동과는 다른 원리를 통해 작동하는 공동자원시민노동 부문의 창안은 (1) 제주 개발에 관한 압력을 낮추는 동시에 (2) 공동자원생활체계 구현을 위한 시민의 협력하부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47. 협력의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본원적 축적: 공동자원생활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조건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엔 일정하게 동료시민의 실천을 유도하여 협력의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제도화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제도화 전략은 (1) 협력의 시간을 (2) 특정 자산 소유를 위한 조건 중 일부로 통합하는 것이다. 곧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양에 따라 자산을 어떤 구속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 구축 과정에 기여한 협력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구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결론

48. 공동자원체계에 관한 우리 시대의 상상이 유토피아주의(utopianism)를 불러내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분명 공동자원체계가 유토피아가 아니다. 공동자원체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자원체계의 방어, 확산, 연결이라는 구상 또한 기존 질서의 필요를 반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자원체계가 동료시민의 공동의 자원 기반을 확대하여, (1) 동료시민의 자율성을 향한 투쟁을 지원하는 동시에 (2) 다른 동료시민과의 연대성 강화를 통해 (3) 지금과는 다른 사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지닌 하나의 접근 방법이라고는 할 수 있다. 그 핵심 방법은 동료시민들에게 공동자원체계를 제공하고 그들이 공동관리하는 방식을 통해 동료시민의 공동자원생활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사회를 통해 국가 및 자본과의 권력 균형을 바꾸는 것이다(Danijela

22) <https://www.jdcenter.com/createjob/projects.cs>

Dolenec, 2012).²³⁾ 이런 변형 과정은 제주 근대화 과정에 대항하여 구축되어온 제주의 자율성을 향한 투쟁의 역사를 계승하면서도, 이를 21세기에 조응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구현하는 문제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제주의 자율성에는 그 자율성의 방어와 확장을 위한 자기기반이 필요하며, 이 기반이 제주도민의 공동의 삶을 촉진할 때, 제주는 외부에서 부과되는 파괴적 명령과 실질적인 협상능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효과

49. 제주공동자원생활체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49-1. 이해관계가 아닌 필요의 사회철학과 동료시민의 협력에 바탕을 둔 동료시민의 안전 보장
 - 49-2. 수평적 자치와 참여적 규칙제정을 통한 민주주의의 강화
 - 49-3. 국가와 시장에 대한 협상능력의 강화 및 국가와 시장의 보완성의 원리 강화
 - 49-4. 자연과 사회의 유기적 순환 관계 구성을 통한 개발압력의 완화와 불평등의 감소
 - 49-5. 제주에 대한 공동감각(common sense)의 재구성을 통한 제주 상식과 윤리의 변화
 - 49-6. 자원 관리의 민주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민주화

23) “The commons as radical democratic project”